

## 인텔, 대만 비아 상대 특허권 침해 소송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인 미국의 인텔은 대만의 비아 테크놀로지스가 인텔 펜티엄-4 마이크로프로세서용 칩셋을 제조하면서 자사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비아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인텔은 비아 테크놀로지스가 P4X266 칩셋과 관련해 자사 보유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칩셋은 컴퓨터의 엔진이라 할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다른 반도체가 통합된 것으로 마이크로프로세서가 PC의 다른 부분과 연결되도록 해준다.

비아의 칩셋은 PC 업체들이 DDR DRAM을 PC에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으로 인텔은 비아의 칩셋 샘플을 확보해 조사한 결과 자사 특허를 침해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인텔은 비아가 손해를 배상하고 시장에 공급된 칩셋을 모두 회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비아측 대변인의 논평은 들을 수 없었다.

이에 앞서 과거에도 비아는 인텔의 펜티엄-3 마이크로프로세서용 칩셋과 관련해 인텔로부터 특허권 침해 소송을 당했으며 이후 양사는 소송을 법정 밖에서 타결지은 바 있다.

출처 로이터인터넷

## 극인들 저작권 지키기 나섰다

#사례1=지난 6일 극단 동승아트센터와 미추, 목화 등 8개 극단(기획사)은 한 유료인터넷 사이트( <http://www.center.co.kr> )를 상대로 한국연극협회 홍승기 고문 변호사에게 저작권 침해 사건을 위임했다.

이들 단체는 “이 유료 사이트가 사전 동의없이 자신들의 공연을 동영상으로 띄워 접속 건당 1천 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법적으로 제재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례2=극단 미추와 일본 스바루 극단의 합작품 히바카리의 마지막 공연이 열린 동승아트센터 동승홀.

한 인터넷 사이트의 기자라는 사람과 극단 관계자 사이에 심상치않은 승강이가 있었다.

극단 관계자는 사전 양해도 없이 공연 중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진을 찍던 그 사람의 카메라를 압수하고 칩을 빼내어 찍은 사진을 지워버렸다. 그러자 그는 “남의 물건을 함부로 탈취했다”며 극단을 상대로 “그만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두개의 풍경이 암시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저작권 사각지대인 연극계의 현실이다.

제작자의 허락없이 공연을 함부로 찍어다 돈벌이에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인데도 이를 무시하는 일부 행태로 연극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 도가 지나치자 이제 연극인들이 법에 호소하기에까지 이른 것이다. 물론 인터넷 사이트 등 군소 업체만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도 아니다. 한 증견 연극인의 말.”굴지의 방송사 가운데 EBS나 아리랑TV가 작품 방영료를 챙겨주는 정도다.

이밖의 예술전문 케이블TV나 삼척동자도 다 아는 국내의 대표적인 공영방송 조차도 저작권 개념이 희박하다.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가 입에 오르내리는 시대다. 얼마전 외국 작품을 저작료도 지불않고 몰래 공연하다 한 단체가 된서리를 맞은 적이 있다. 국내에서도 당연히 그런 국제기준이 통해야 한다. 일본은 공연 팸플릿에 실린 신문기사에 대해서도 저작권료를 보장해 주고 있을 정도다.

연극계의 이번 송사가 연극은 물론 국내의 다

른 저작권 사각지대에까지 확산되는 밑알이 되길 기대한다.

출처 중앙일보

## 이베이, 경매 처리한 물품 관련 저작권 침해 소송 승리

온라인 경매 업체 이베이(eBay)는 불법제조된 영화가 자사 경매 사이트에서 판매된 것과 관련해 제기됐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연방 법원이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고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베이는 크리스티 경매소나 소더비 등 기존 경매소와는 달리 자신들은 독립적인 구매자와 판매자들을 연결시켜주는 디지털 청산소 기능을 수행한다는 지금까지의 노력이 이로써 법원에 의해 인정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베이의 선임 지적재산권 고문 마이클 리히터는 “우리는 이번 판결이 지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로써 저작권이나 상표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물건이 우리 사이트에 오르더라도 우리는 면책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이베이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1970년대 다큐멘터리 영화에 대한 불법 DVD 복제품이 판매됐다고 로스앤젤레스의 영화 제작자 로버트 헨드릭슨이 이베이를 상대로 수백만달러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데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판결에서 로버트 켈레허 연방판사는 헨드릭슨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베이는 자사 사이트를 통해 매매되는 물건의 출처나 기원 등을 일일이 검증할 능력도 없을 뿐 아니라 의무도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 로이터인터넷

## 삼성전자] 반도체 특허 제소

삼성전자가 캐나다 반도체업체로부터 D램 관련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제소당했다.

삼성전자는 캐나다의 반도체 테스트 장비업체인 모세이드 테코놀로지스가 최근 삼성전자측과 특허권 관련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7건의 특허침해를 주장하며 삼성전자를 미국 뉴저지 연방법원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모세이드는 지난 99년부터 메모리반도체 생산 업체들로부터 로열티 징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후지쓰 NEC 도시바 히타치 미쓰비시 등일본 업체들과 D램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대해 삼성측은 “모세이드가 제소한 특허를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D램 표준화기구인 JEDEC에 공개된 기술들이어서 이번 소송은 무효화될것으로 보고 있다”며 “법적인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세이드는 D램 관련기술을 비롯 280건이 넘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서울경제

## 인터넷 스포츠복권 특허권 논란

= 특허업체 엔지넷 ‘관련 업체 사업추진엔 로열티 내야’ =

= 타이거풀스 “사업 예정대로 진행” 파문 예상 =  
최근 코스닥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인터넷 복표 사업’이 비즈니스 모델로 특허가 인정됨에 따라 타이거풀스아이 등관련 업체에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인터넷 오락전문 포털업체인 엔지넷의 강문수 사장은 “월드컵축구, 야구, 농



구 등 스포츠복권 발행방법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이 3년여만에 특허로 인정돼 특허청에서 공식 특허권을 교부받았다"고 밝혔다.

강 사장은 "곧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비롯한 관련 업체에 이같은 사실을 공식 통보할 예정"이라며 "인터넷 복표사업을 추진중인 업체는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터넷 복표사업의 대표주자적인 타이거풀스측이 이번 특허인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스포츠 복표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파문이 일어날 조짐이다.

양재찬 타이거풀스아이 이사는 "국내의 경우 특허내용이 매우 포괄적이라 논란의 소지가 많다"며 "인터넷 복표사업이 오프라인에서 활발히 진행해 온 사업을 단순히 온라인에 옮겨놓은 것에 불과한 만큼 특허인정에 개의치 않고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 이사는 또 "사업추진 과정에서 특허와 관련해 소송이 제기 될 경우 특허청에 재심의 등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타이거풀스아이가 이같이 강경한 방침을 밝힘에 따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통하는 인터넷 복표사업을 놓고 관련 업체간에 치열한 신경전과함께 소송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타이거풀스아이는 지주회사인 타이거풀스인터내셔널의 자회사로 지난 8월 31일 코스닥 등록기업인 한국아스텐과 합병을 결정해 현재 금감원에 합병신고서가 제출한 상태.

출처 매일경제

러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교통카드시스템 공급업체인 씨엔씨엔터프라이즈(대표 전영삼)로 '후불제 교통카드시스템'에 대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케이비테크놀러지를 상대로 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중이며, 또 교통카드 단말기업체인 인테크산업도 '경기교통카드시스템 운영규정 계약위반'을 이유로 케이비테크놀러지를 비롯한 3개사를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

이에 대해 케이비테크놀러지(대표 조정일)는 '씨엔씨엔터프라이즈와 인테크산업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라는 공식입장을 내고, "이들의 주장이 전혀 근거없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결국 '교통카드시스템 특허권'을 둘러싼 업체들의 공방은 법정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커졌으며, 또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도 적지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먼저, 케이비 측은 씨엔씨의 '후불제 교통카드시스템' 특허침해 주장과 관련, "작년 5월 서울시는 서울마을버스에 부착할 교통카드 단말기도 현재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에서 사용되고 있는 '선불 교통카드'와 '후불식 교통신용카드' 모두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케이비테크가 선?후불식 교통카드를 모든 수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법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점을 들어 자사가 후불제 교통카드시스템 특허를 사용한 것이 정당함을 주장했다. 씨엔씨 측은 '자사와 사전협의 없이 국민카드에만 특허료를 지급하고 무단으로 마을버스에 후불제 교통카드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가 교통카드운영회 심의 당시 '후불제 교통카드'의 공동특허권자인 국민카드와 씨엔씨엔터프라이즈를 모두 참석시켰고, 이들로부터 특허권 행사에 관한 동의까지 받은 사실이 있다"며 조목 조목 반박했다.



### 교통카드시스템 특허권 공방 갈수록 꼬여가네

'교통카드시스템 특허권' 공방이 좀처럼 수그

아울러 '공동특허권자 모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동특허권 당사자들끼리는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특허권 행사를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특허법 99조)는 조항을 들어, "국민카드에게만 특허료를 지급하고 특허권을 사용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특허권침해 시비는 특허권 공동소유권자인 씨엔씨와 국민카드 간에 가릴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케이비 측은 최근 인텍크 산업이 '경기교통카드시스템 공급운영' 계약 위반을 이유로 자사를 상대로 30억원의 '교통카드 사용금지가 처분신청'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지난 1996년 5월, 인텍크와 경기버스조합간 체결된 계약서에는, 인텍크가 경기버스조합이 지정한 회사에 한해서만 시스템을 공급하기로 돼 있다"며 경기버스조합의 교통카드시스템에 대한 독점 공급권을 갖고 있다는 인텍크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이와 함께 양사는 손해배상 소송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서울시 마을버스 후불시스템 적용에 대해 교통카드 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해 특허권 침해 여부를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했으며 로열티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케이비테크는 씨엔씨엔터프라이즈의 후불시스템 관련 특허를 사실상 인정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서울 마을버스를 제외한 지역에서 케이비테크가 후불시스템을 적용할 경우에는 특허 사용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씨엔씨엔터프라이즈는 후불시스템 관련 특허권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통한 부가수익이 발생하는 등 후불시스템의 독보적인 지위를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선불형 전자화폐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케이비테크는 후불시스템 관련 특허 실시권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선후불형 전자화폐 지불시스템을 모두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양사는 그동안 특허권 분쟁으로 야기된 기업이미지 손상을 회복하기 위해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양사의 장점을 결합한 시너지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출처 서울경제

## 후불시스템] 특허분쟁 해결

전자화폐 업체인 케이비테크놀로지와 씨엔씨엔터프라이즈가 특허권 소송을 서로 취하였다.

케이비테크는 오는 25일과 26일 코스닥등록을 위한 일반공모를 실시하는데 이번 특허권분쟁 해결로 코스닥시장 등록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씨엔씨엔터프라이즈와 케이비테크는 후불시스템 관련 특허권실시 허락 계약을 체결했다.

또 씨엔씨엔터프라이즈는 지난 7월 케이비테크를 상대로 제기한 5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였으며 케이비테크도 8월 씨엔씨엔터프라이즈에 대한 13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였다.

## 화섬업계, 수요 급감·반덤핑 제소이여 특허분쟁으로 골머리

국내 화섬업계가 수요 급감, 반덤핑 제소에 이어 이번에는 특허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호성 휴비스 코오롱 등 폴리에스테르 원사 업체들은 최근 미국의 듀폰이 특허청에 등록한 폴리에스테르 극세사의 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키로 했다. 화섬업

체들은 이에 앞서 한국화섬협회 명의로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했다. 화섬업체가 듀폰 측의 특허권 침해 제소가 없는 상황에서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기로 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은 향후 발생 가능한 로열티 요구 등을 사전에 차단키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석비협 섬유연구소 특허과장은 “현재 전체 생산에서 극세사의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지만 향후 극세사 쪽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업계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듀폰과 같은 거대기업과 상대하기 위해서는 업체들간 공동대응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또 “듀폰이 특허를 주장하는 기술은 업계에 이미 알려진 것으로 자신들의 고유 기술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의신청을 냈다”고 덧붙였다. 국내 최대 타이어코드지(타이어 보강재) 메이커인 효성은 미국 하니웰과 또 다른 특허분쟁을 벌이고 있다. 하니웰측이 폴리에스테르 타이어코드지 부문에서 세계시장의 40%, 국내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효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효성은 하니웰이 주장하는 특허는 독자적인 기술로 보기 어렵다며 특허 이의신청을 냈다. 국내에서 1심(특허심판원)은 효성이, 2심(특허법원)은 하니웰이 각각 승소했으며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효성 관계자는 “특허분쟁의 경우 평균 1~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므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비용부담이 되더라도 끝까지 싸울 방침”이라고 말했다.

출처 한국경제

저작권을 둘러싼 소송으로 폐쇄 위기에 몰린 온라인 음악파일다운로드 서비스업체 냅스터가 서서히 합법화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 냅스터는 저작권 위반혐의로 소송을 낸 전국음악저작권협회(NMPA)에 보상금 2600만달러를 지불하고 유료화 서비스 개시 이후 수입의 일정액을 나눠주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음악저작권자들은 음반업체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배포 음악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터넷 저작권료 수입이 CD판매에 의한 것보다 많기 때문에 MP3 등 몇몇 업체와 라이선스 합의를 본 바 있다. 양측은 구체적인 협상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으나 냅스터가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NMPA 소속 음악을 서비스하되 다운로드받은 노래가 휴대용 플레이어나 CD로 제작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의 음악저작권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NMPA 측은 “합법화에 대한 냅스터의 의지를 높이시 합의를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로 냅스터는 저작권자들과 다툼을 해결해 합법화에 한발짝 더 다가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음반사들과 소송이 아직 남아 있어 회생을 속단할 수 없는 처지다. 관련업계는 냅스터가 이번 합의사항을 잘 이행할 경우 궁극적으로 음반사 보유 음악도 추진 중인 유료서비스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냅스터는 법원의 저작권침해 판결로 기존서비스를 폐쇄하고 연내 유료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출처 매일경제

 **냅스터.음악저작권자 협상타결**

 **미국 텔룰라, LG전자에 WLL 관련기술 특허 침해로 제소**

미국 나스닥 상장기업인 텔룰라 코퍼레이션은 LG전자에 대해 WLL(무선가입자망) 관련기술에 대해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텔룰라 코퍼레이션은 이날 “미국,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무선통신 인터페이스 관련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LG전자가 자사 RJ-11기술을 무단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케네스 E. 밀라드 CEO는 “지난 2년 동안 LG전자와 기술사용에 대해 합의를 보기 위해 협상을 벌여왔다”며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이 생산돼 부득이 한국법정에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전자 관계자는 “텔룰라측에서 초기 로열티를 통상적인 로열티보다 수십배 가량 턱없이 높게 요구해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명령에 대한 국내 법원의 집행판결이나 김씨의 동의가없는 상태에서 H사가 곧바로 도메인명을 이전하는 것은 관리자로서의 의무 위반”이라며 “일단 이전되고 나면 김씨의 권리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france2.fr’ 과 ‘france3.fr’ 를 소유한 프랑스 국립2채널과3채널 방송국이 올해 3월 “유사 도메인명을 사용한 사이트에 음란한 사진을 올려놓아 이미지에 손상을 줬다”며 김씨를 상대로 낭트지방법원에소송을 내 이전명령을 받은 뒤 H사에 도메인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자 가처분신청을 냈다.

출처 동아일보

## 테세라, 샤프 상대 특허소송에서 승소

일본의 샤프가 특허 침해와 관련된 소송에서 테세라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반도체 지적재산권(IP) 기업인 테세라 측은 “미국의 국제교역재판소(ITC)가 일본 샤프의 CSP 반도체 패키지 와이어 본딩 기술 중 일부가 테세라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다”고 발표했다. 소송에서 쟁점이 된 패키지 기술은 휴대용 전화, MP3 플레이어, 개인정보단말기(PDA) 등 초소형 정보기기 제품 설계용 반도체 패키지에 쓰이는 핵심기술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문제의 패키지를 실장한 샤프의 정보기기 제품은 미국 내 반입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테세라 측은 미 연방법원에도 샤프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반도체 패키지 관련한 지적재산권(IP)를 보유하고 있는 테세라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두고 있다.

출처 rems24.com

## 韓-佛 ‘도메인 분쟁’ 한국인 판정소

인터넷 도메인명을 반환하라는 외국 법원의 명령이 있었다라도 국내 보유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를 그대로 따를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이공현 부장판사)는 프랑스 국영TV 도메인명과 유사한 ‘www.france2.com’, ‘www.france3.com’ 을 소유한 김모씨가 “프랑스 법원의 이전명령대로 도메인을 반환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국내 도메인등록 대행기관 H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프랑스 낭트지방법원이 김씨에게 도메인 이전을 명령했다라도 이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이 명령의 승인이나집행이 국내에서 허용된다고 단정하

**【판례번호】**가결사정(상표) 2000. 11. 28. 대법원 2000후1658 판결

**【판시사항】**

**【TD0212】** 출원상표 “BOSS+AUDIO SYSTEMS”와 인용상표 “HUGO+HUGO BOSS”는 유사하다.

**【TD2539】** 상표법 제51조제1호의 규정 취지는 비록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 하더라도 자기의 성명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관하여는 그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등록상표권자가 그 상표 사용을 금지시키지 못하게 정을 의미할 뿐이지 등록상표가 등록상표권자 자신의 성명을 표창하는 것이라고 하여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인용상표 중 상표권자의 성명에 해당하는 ‘HUGO BOSS’ 부분을 근거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하여도 상표법 제51조제1호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TD1090】**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다른 상표의 등록례에 구애받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에이브이에이 엔터프라이지즈 인코로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용식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0. 6. 23. 선고 2000허1375 판결

**【출원상표】**

**【인용상표】**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표장 전체의 구성상 상·하단부가 분리되어 있고, 하단부인 ‘AUDIO SYSTEMS’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는 ‘BOSS’ 부분이고, 한편 인용상표(등록번호 제302296호)는 그 표장 전체의 구성상 상단에 표기된 영문자 ‘HUGO’ 부분보다 하단에 표기된 ‘HUGO BOSS’ 부분이 상대적으로 작은 글씨로 표기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하단부가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 없고, 외관상 상·하단부가 분리되어 있으며, 하단부 중 ‘HUGO’ 부분과 ‘BOSS’ 부분은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남는 것도 아니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부자연스러운 정도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어 ‘HUGO’ 및 ‘BOSS’로 각기 호칭·관념될 수 있고, 인용상표가 하단 뒷부분인 ‘BOSS’만으로 약칭, 관념될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의 ‘BOSS’와 호칭·관념이 동일하여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고,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두 상표의 지정상품은 구 상품류구분 제39류 제7군의 전기 통신기계구에 속하는 상품으로서 상품의 기본 용도, 제조업체, 최종 수요자층 등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유사한 상품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1상표 1출원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표법 제51조제1호의 규정 취지는 비록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 하더라도 기

의 성명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관하여는 그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등록상표권자가 그 상표 사용을 금지시키지 못하게 정을 의미할 뿐이지 등록상표가 등록상표권자 자신의 성명을 표창하는 것이라고 하여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인용상표 중 상표권자의 성명에 해당하는 'HUGO BOSS' 부분을 근거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하여도 상표법 제51조제1호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9. 4. 23. 선고 98후 2924 판결, 1999. 6. 8. 선고 98후1143판결 등 참조) 다른 상표의 등록례에 구애받지 아니한다.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대법관 서성(주심) 대법관 유지담 대법관 박재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 4. 27. 98헌바95·96, 99헌바2, 2000헌바4(병합) [합헌]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위헌소원]  
... [판례집 12-1, 508~543]

### 【판시 사항】

1. 이 사건 법률규정의 “일반의 법률사건” 및 “법률사무” 부분이 불명확하여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규정이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

사무취급을 포괄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법률 사무를 변호사에게 독점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일반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법률규정이 변호사와 비교하여 다른 법률사무관련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결정 요지】

1. 이 사건 법률규정의 “일반의 법률사건”은 이른바 일반조항으로서 다소 불확정한 개념이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법률규정의 입법 취지, 입법연혁, 규정형식 및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법 제3조를 종합하여 보면, “일반의 법률사건”이란「법률상의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다툼 또는 의문에 관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구체적인 예가 바로 위 규정에 열거된 소송사건 등이라고 보여진다. 즉, 소송사건 등은 일반의 법률사건의 전형적인 예로서 “일반의 법률사건”이 무엇인가를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반의 법률사건”은 위에 열거된 소송사건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확정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규정의 “일반의 법률사건”과 “법률사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 또는 사무가 이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다고 보여지고,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확대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입법자가 변호사제도를 도입하여 법률사무 전반을 변호사에게 독점시키고 그 직무수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것은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윤리적 소양을 갖춘 변호사에게 법률사무를 맡김으로써 법률사무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데 있는 것이고, 이 사건 법률규정은 위와 같은 변호사제도를 보호·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바, 변호사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목적, 변호사 아닌 자의 모든 법률사무취급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금품 등 이익을 얻을 목적의 법률사무취급만을 금지하고 있고, 금지되는 법률사무취급의 범위와 방법 및 그 정도 등에 관하여도 법률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법률규정이 비변호사에 대하여 법률사무 전반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 아닌 다른 법률사무관련직종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법률사무의 일부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변호사를 비롯하여 법무사, 변리사 및 손해사정인 등 법률사무관련직업에 대한 자격제도는 그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목적, 각 전문분야가 갖는 특성과 그 업무의 성격, 각 전문분야의 자격요건 및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통제가 서로 다른 합리적, 합목적적인 차이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며, 달리 입법자가 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변호사와 비교

하여 청구인들을 포함한 다른 법률사무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도 없다.

재판관 이영모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규정은 1993. 3. 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된 것이고, 손해사정인의 업무범위에 관한 보험업법 제204의4는 1995. 1. 5. 법률 제4865호로 개정·신설된 것으로서, 두 규정의 내용이 입법목적에 비추어 상호 모순·저촉되므로 해석을 통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두 법률규정 중 어느 쪽이 우위에 서는지를 가릴 수 있는 뚜렷한 근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위 보험업법의 규정이 이 사건 법률규정보다 뒤에 개정·신설된 점에 비추어 그 효력면에서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후법우선의 원칙)

따라서 예시적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규정의 구성요건인 “일반의 법률사건”에는 손해사정업무를 포함시켜서는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법관의 해석재량으로 유죄판단을 할 여지가 남아있고, 이러한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적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한 이 규정은 이 범위 안에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고 손해사정인의 직업선택·행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것이다.

【당사자】

청 구 인 1. 송용경(98헌바95)

2. 배순탁(98헌바96)

3. 조병래(99헌바2)

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은수 외 1인

4. 황우필(2000헌바4)

대리인 법무법인 세명

담당변호사 김응문

- 당해사건 1. 대구지방법원 98노2822 변호사법 위반(98헌바95)  
 2. 대구지방법원 98노2819 변호사법 위반(98헌바96)  
 3. 대구지방법원 98노2818 변호사법 위반(99헌바2)  
 4. 대법원 99도771 변호사법 위반(2000헌바4)

### 【심판대상조문】

변호사법(1993. 3. 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된 것) 제9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생략
2.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비송사건·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익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사건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사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3. 생략

### 【참조 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5조, 제37조 제2항  
 변호사법(1993. 3. 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된 것)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공무소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을 그 직무로 한다.

보험업법(1998. 1. 13. 법률 제5500호로 개정된 것) 제204조(손해사정) 손해보험사업자는 손해사정인을 고용하여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하여 당해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인을 따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업법(1998. 1. 13. 법률 제5500호로 개정된 것) 제204조의4(손해사정인 등의 업무) 손해사정인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기타 손해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참조 판례】

1.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도563, 공보 1994, 1748
2. 헌재 1996. 8. 29. 94헌마113, 판례집 8-2, 141, 153
- 헌재 1997. 4. 24. 95헌마273, 판례집 9-1, 487, 496
- 헌재 1996. 4. 25. 94헌마129등, 판례집 8-1, 449, 460